
스토킹 ·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

2026. 7.

스토킹 · 교제폭력 대응
관계부처TF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추진 과제	4
IV. 추진 일정	10
참고. 교제폭력·스토킹 대응 가이드(레드플래그) ...	12

I. 추진 배경

□ 추진 배경

- 스톡킹·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, 범행 초기부터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, 실효적인 현장 대응·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·제도 등 개선 필요

* (관련 언론 보도) ▷ 1.7일마다 1명씩... '교제폭력'에 쓰러지는 연인들, 대책은 제자리('26.6.2., 뉴스핌) ▷ 교제폭력으로 죽는 여성 이틀에 1명 꼴...그런데도 처벌할 법이 없다('26.6.6., 한국)

◆ (대통령 지시사항)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톡킹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

□ 추진 경과

- (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) 스톡킹·교제폭력 피해자보호·지원 강화 방안 수립·발표('25. 9. 24.)
 - * (4대 분야 12개 과제) △법·제도 강화, △사법기관 선제 대응, △피해자 지원 강화, △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
- (관계부처 스톡킹·교제폭력 대응 BH 회의) 민정·사회수석 주재, 법무부·성평등가족부·대검찰청·경찰청 참석('26. 3. 27.)
- (관계부처TF 구성·운영) 법무부 총괄, 성평등가족부·대검찰청·경찰청 참여 TF 구성('26. 4.~)
 - 부처별 이행점검 및 추가 대책 마련, 개선 과제 논의 및 추진
 - * 5. 28. 전체 대면회의 진행하였고, 그 외 부처간 수시 회의·협의 진행

Ⅱ. 현황 및 문제점

1 스토킹·교제폭력 현황

□ 개념 및 특성

- (개념) 스토킹·교제폭력 등 '관계성 범죄'는 가·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체·정서·성적·경제적 폭력 등 범죄를 뜻함

■ 대표 유형

- (스토킹)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·반복되는 접근, 감시, 정보도용 등 일상 침해 행위
- (교제폭력) 연인 간 폭력, 성적 강요, 이별 후 협박·감시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, 성적, 정서적, 경제적 폭력, 통제 행위

- (특성) △지속·반복성, 강력·보복 범죄로 비화 경향, △신고 지연 및 은폐 경향, △심리적 지배와 고립으로 피해 확대·지속, △디지털 통한 위협·감시 등 신종 수법 확대 등

□ 범죄 현황 (경찰청 통계 기준)

- (강력범죄) '25년 발생한 살인범죄 총 669건 중 140건(20.9%)은 여성 폭력*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집계

* 가정폭력 90건, 교제폭력 27건, 스토킹 19건, 성폭력 4건

유형	주요 지표('25)			
	112신고(건)	검거(명)	구속률	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
스토킹	44,687	16,400	3.1%	잠정조치 법원 결정율 82.2%, 이 중 전자장치 부착 37.2%, 유치 31.3%
교제폭력	105,327	14,526	2.5%	-

※ '25년 통계는 확정 전 통계로 향후 보정 작업을 통해 수정될 수 있음

- (주된 피해자) 여성(75%), 20~50대 집중, 가해자에 대한 양가적 감정 有
- (반복 위험) 접근금지 명령 무시, 보복 및 재폭력 빈발

2 주요 문제점

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(26.3.14)* 조치 미흡 사항

- * 가해자 김훈(전자장치 부착 중)이 과거 사실혼 관계 여성을 직장 근처에서 흉기로 살해
- (사건접수 지연) 피해자가 경찰서 방문 상담 및 112신고를 반복하였으나 고소장 접수까지 사건접수가 지연
- (이송·병합 지연) 추가 접수 사건이 선행 수사 관서로 이송까지 3주 소요, 병합 지연
- (격리 조치 미흡) 고위험 사건임에도 신병 미확보, 전자장치 부착, 유치 등 격리 미흡

□ 법·제도 미비

- (교제폭력)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를 통해, 가해자 처벌과 함께 접근금지 등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
- (스토킹)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에도 가벼운 처벌·선처가 반복되면서 실질적 제재 약화, 잠정조치 기각 등의 경우 보호공백 발생

□ 현장 대응의 어려움

-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가·피해자 즉각 분리 애로
- 반복신고자·고위험 피해자 집중 관리 시스템 부재
- 재발 위험, 보복가능성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 필요

□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책 기반 확대 필요

-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피해 신고 및 대응 미흡
- 친밀관계폭력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환류 체계 미흡

Ⅲ. 추진 과제

□ 법·제도 강화

- **(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)**^{법무부}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‘피해자보호명령’ 제도를 도입하는 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('26. 3. 국회 통과, '27. 4. 시행 예정)
 - * 주요 내용 : 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90일 이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(100m 접근금지, 전기통신 접근금지) 청구 가능
- **(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)**^{법무부} 교제폭력 처벌 및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도입을 통해 교제폭력 대응 강화 추진
 - * 교제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지배나 통제행위를 처벌하고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(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)
- **(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)**^{법무부}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스토킹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
 - * 관련 「스토킹처벌법」 개정안 다수 국회 법사위 계류 중
- **(특정강력범죄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)**^{법무부, 대검찰청} 친밀한 관계·前 연인 관계 간 살인·살인미수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
 - 특례 제도 도입에 따라 대상 죄명, 조치사항 등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여 적극 활용 검토 지시
 - * '25. 12. 「특정강력범죄법」 개정 → '26. 6. 24. 시행

- **(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)**^{법무부} 스토킹 등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
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위치·동선 알림 제도 시행

* '25. 12. 「전자장치부착법」 개정 → '26. 6. 24. 시행



- **(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)**^{성평등부} 사건 발생 요인 규명
및 재발 방지 대책 도출을 위한 사례 분석 제도 도입 추진

* 시범 분석 및 실행체계(안) 마련 연구 추진('26. 7.~), 관련 「가정폭력방지법」 개정안
상임위 계류 중

□ 기관 협업 등 선제적 대응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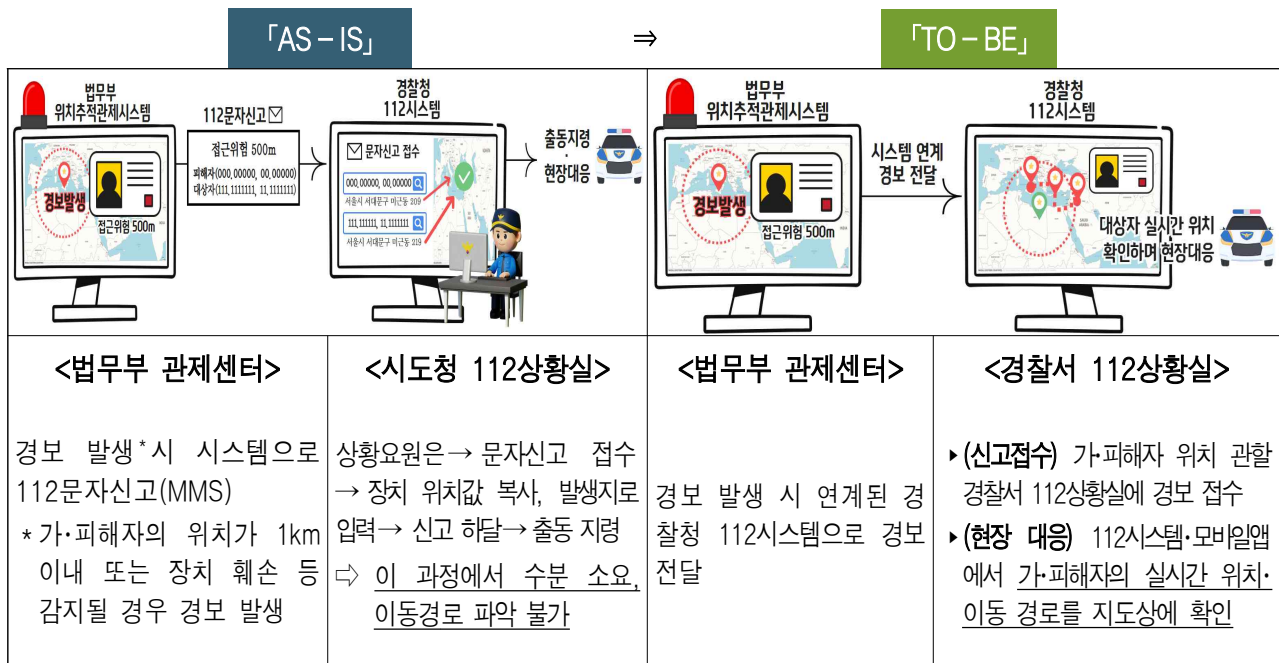
- **(전자감독·피해자보호 체계 강화)**^{법무부, 경찰청}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
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·임시조치 결정 시, 법무부-경찰
정보 연계로 피해자 공동 보호 대응 체계 구축
- 경찰 신청 잠정·임시조치 결정 시 KICS를 통해 보호관찰소로 피해자
정보 자동 공유, 접근 시 경찰(피해자)·보호관찰관(가해자) 동시 출동

* 2주간(6.22.~7.3.) 현장교육 및 합동 FTX 실시 → '26.7.6. 전국 시행

○ **(전자장치-112 연계시스템 구축)**^{법무부, 경찰청}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-
경찰청 112시스템 실시간 연계 추진

- 경보 발생 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·피해자 위치가
관할 112상황실에 자동 접수, 지도상 실시간 위치 확인·출동으로
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

* '26. 7. 개발 착수 → '26. 12. 완료 예정



○ **(전자장치-스마트워치 연동)**^{법무부, 경찰청}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‘스마트워치’에도 연동하여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

* '26. 4. 법무부 기능 개발 완료 → 스마트워치 기기 성능 개선 등 논의 후 적용 예정

○ **(스토킹 전문 심리치료)**^{법무부}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내적 위험 요인 파악과 적시 개입을 위한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('26. 6. 프로그램 개발 완료)

- **(스토킹 등 방지 종합개선방안 마련)**^{대검찰청} 재범위험성 있는 가해자에 대한 스톱킹 잠정조치 청구 시 종별 추가·변경 적극 활용
 - 전자장치 부착 중인 피의자에 대한 중복 부착 청구 적극 검토
 - '잠정조치(유치) 결정과 구속영장의 집행 순서 및 효력' 등 실무상 주요 쟁점 개선방안 마련 후 전국 검찰청 전파
- **(잠정조치 체크리스트 제작·배포)**^{대검찰청} 스톱킹 잠정조치 청구 시 참고 '체크리스트' 제작 후 전국 검찰청 배포

* 주요 교제폭력·살인 사건 80건 분석 → 강력범죄 전조 신호 분석

[잠정조치 체크리스트 주요 인자]

- ▶ 가해자·피해자 간 교제, 동거, 혼인, 사실혼 등(현재·과거)
- ▶ 가해자와 지속적인 갈등 상황 존재(이별 요구, 외도 의심 등)
- ▶ 폭력성향, 피해자의 불안 호소,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
- ▶ 집착성향,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협(목조름, 흉기사용) 등

- **(가해자 격리 강화)**^{경찰청} 3단계(고·중·저) 위험도 분류체계 도입 등, 격리조치 대폭 강화
 - 고위험 : 구속영장·전자장치·유치 동시 신청, 민간경호·스마트워치·CCTV 사전 조치 / 중위험 :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 실시
- * '25년 1~5월 대비 '26년 1~5월 격리조치 신청 건수 대폭 상승 : (구속) 88.5% ↑ / (유치) 183.8% ↑ / (전자장치) 859.7% ↑
- **(관련 사건 신속 병합·책임수사관서 지정)**^{경찰청} 복수 관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 병합 절차 개선
 - 관할 불문 즉시 사건 접수, 관련 사건 확인 시 즉시 보고, 先접수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 등

□ 피해자 지원 강화

- **(상담소-경찰 공동대응체계 구축)**^{성평등부,경찰청}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피해자 집중 관리 체계 구축
 - A등급 : 경찰 집중 모니터링(안전 확보·재발 방지 중심)
 - B등급 : 상담소 모니터링(전문 심리상담, 위험성 발견·치료 중심)

< 공동대응체계 >



- * '26. 5. 18.~ 시행 / 상담소와 주기적 간담회 개최, 경찰 조치결과 공유 등 현장 안착 지원('26. 7.~)
- **(피해자 위험성 판단 내실화)**^{성평등부,대검찰청,경찰청}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신청·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*·모니터링 자료 등 첨부 활성화
 - * 가정폭력 상담소·보호시설 등에서 피해자가 상담을 받은 경우 피해 유형, 상담 기간, 피해 내용 등 기재하여 발급
- **(민간경호, 지능형 CCTV 등 고위험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)**^{경찰청}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, 지능형 CCTV 확대 등 강화된 안전조치 수단 제공
 - * ①**(민간경호)** 고위험 피해자를 선별하여 민간경호원(2인) 밀착 경호 제공
 - ②**(지능형 CCTV)** 주거지에 위험(침입·배회) 감지, 피해자에게 경고해주는 CCTV 설치

□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

- **(고위험 징후 안내·레드플래그)**^{성평등부} 교제폭력·스토킹 고위험 징후 (10가지)와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대응 가이드(레드플래그) 마련
 - 대국민 온·오프라인 홍보, 상담(1366) 및 신고(112) 활성화 추진
 - * **10가지 고위험 징후** : ①폭력성향 ②집착·강압 통제 ③갈등 심화 ④생명 위협 ⑤전력 ⑥보호조치 위반 ⑦피해자 비난 ⑧음주·약물 ⑨높은 불안 ⑩고립 상황
- **(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추진)**^{성평등부, 법무부, 경찰청} 관계기관 간 세미나를 합동 개최하여 공동 학습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간 인식 차이 해소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·확산('26. 7.~)
 - * 성평등가족부(주관), 법무부, 경찰청 / 법원 연구회 등 참여
- **(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)**^{성평등부} 수사·재판기관 대상 친밀관계폭력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
 - * 젠더폭력 이해와 피해자 관점에서의 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(양성평등교육진흥원) 전문 강사 파견 교육 지원
 - 수사·재판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에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

IV. 추진 일정

추진과제	일정	담당부처
법·제도 강화		
(1)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(완료) ※ '27. 4. 시행 예정	-	법무부
(2) 교제폭력 관련법 마련	'26. 下	법무부
(3)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	'26. 下	법무부
(4) 특정강력범죄 국선변호사 지원 특례(완료) ※ '26. 6. 시행	-	법무부, 대검찰청
(5)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(완료) ※ '26. 6. 시행	-	법무부
(6)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	'26. 下	성평등부
기관 협업 등 선제적 대응 강화		
(1) 전자감독·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	'26. 7.	법무부, 경찰청
(2) 전자장치-112 연계시스템 구축	'26. 下	법무부, 경찰청
(3) 전자장치-스마트워치 연동	'26. 4.-	법무부, 경찰청
(4)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	'26. 上	법무부
(5) 스토킹 등 방지 종합개선방안 마련	'26. 上	대검찰청
(6) 잠정조치 체크리스트 제작·배포	'26. 上	대검찰청
(7) 위험도 분류 - 가해자 격리 강화	'26. 上	경찰청
(8) 관련 사건 신속 병합·책임수사관서 지정	'26. 上	경찰청

피해자 지원 강화		
(1) 상담소-경찰 공동대응체계 구축	'26. 上	성평등부, 경찰청
(2) 피해자 위험성 판단 내실화	'26. 下	성평등부, 대검찰청, 경찰청
(3) 민간경호, 지능형 CCTV 등 고위험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※ 시행 중	-	경찰청
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		
(1) 고위험 징후 안내·레드플래그	'26. 下	성평등부
(2)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추진	'26. 下	성평등부, 법무부, 경찰청
(3)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	'26. 下	성평등부



교제폭력·스토킹 레드플래그 10

레드플래그(고위험 징후) 조기 인식 및 단계별 보호 조치 안내

교제폭력·스토킹 고위험 징후 10



폭력 성향

폭행·폭언, 가족·지인·반려동물 신변 위협, 자살·자해 협박, 재물 손괴 등 폭력적 행동



보호 조치 위반

접근 금지·연락 금지 등 법적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접근 또는 연락 지속



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

미행·위치 추적·감시, 직장·주변인 등에게 접근, 다른 만남 차단 등 일상 전반 통제



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

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정당화, 허위 진술 강요, 수사 비협조



갈등 심화

이별·이혼·외도의 의심, 재산·양육권 다툼 등 갈등 이후 폭력·협박·집착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



음주·약물

주취 상태에서 폭력, 잦은 폭음, 약물 오남용



생명 위협

목 조름, 흉기 사용 등 직접적인 생명 위협 경험



높은 불안

보복·생명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



범행·신고 전력

여러 차례 신고·제지 후에도 가해 행동 반복 및 수위 상승



고립 상황

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·지인이 주변에 없는 상태

고위험 징후가 있다면 즉시 상담¹³⁶⁶, 신고¹¹² 하세요.



24시간 상담 및 신고

여성긴급전화 **1366**

(국번없이 ☎ 1366, women1366.kr)

경찰 긴급신고 **112**



수사·재판 중 체포·구속 가능



스토킹 신고 시 보호 및 제재 조치

1

STEP 01·즉시 시행 경찰관 직권

긴급 응급조치

-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

2

STEP 02·법원 결정 강력 제재

잠정조치

-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(1호)
-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2·3호)
-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실시간 감시(3호의2)
-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(4호)